

# 사하구오수.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3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4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11.2.(제87회사하구의회의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

원안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구용대 )

가. 제안이유

- 정화조청소대행업자의 부적합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,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정화조청소수수료 할증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정화조청소대행업자의 부적합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명확히함(안제6조1항)
  - 설치신고를 하지않은 경우
  -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 -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로 명확히 함

다.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정화조청소수수료 할증조항을 폐지함(안제8조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.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비정상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규정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여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
-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조항 제8조제2항은 법적안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함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강정순,장용희의원 : 빈집등에도 정화조청소를 해야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가택 방문,반상회등을 통하여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
- 이해수의원 : 현재까지 정화조청소수수료 할증요금 징수한금액을 불우세대의 정화조청소수수료조로 부담할 의향은

### 5. 토론 요 지 : 생 략

#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